

[별표 6]

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수수료의 기준(제10조 관련)

1.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$$[\text{수수료} = \text{기본 수수료} + \text{인건비} + \text{직접 경비}]$$

2. 수수료의 각 항목별 적용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| 항목 | 적용 범위 | 산정기준 |
|--------|---|---|
| 기본 수수료 | 행정 업무(인증심사 및 시험평가 신청 접수, 상담, 계약, 심사·평가 팀 구성, 심사·평가계획서 작성 및 발송, 인증서·결과서 발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다)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| 실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 (모든 신청인에게 일괄 적용) |
| 인건비 | 심사 및 평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| 업무 최소 단위 시간에 심사원 수와 평균 노임단가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. |
| 직접 경비 | 심사 및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 | 실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인증기관 자체 예비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. |